

2004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 審 査 報 告 書

2004. 11. 5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1월 1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4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4. 5.27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부결
제14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4. 11.5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 연 수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근대 문화·예술사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상범 화백의 화실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매입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.
- 이화동에 설치·운영중인 견인차량보관소 부지에 2005년도 상반기중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평창동에 소재한 적정지역에 해당 부지를 매입·이전하여 견인차량보관소를 건립하여 민원해소 및 불법차량 견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생 략

- 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- 5. 討 論 要 旨 : 없 음
- 6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- 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- 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